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10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목 차

|                                                                                              |          |
|----------------------------------------------------------------------------------------------|----------|
| <b>I . 윤중오의원 대표발의(제2214810호) .....</b>                                                       | <b>1</b> |
| 1. 제안경위 .....                                                                                | 1        |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3. 검토의견 .....                                                                                | 3        |
| 가. 총괄적 검토 .....                                                                              | 3        |
| 나. 재하도급 및 재하도급인 정의 신설<br>(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14호의2 신설) .....                                     | 9        |
| 다. 정부의 책무에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포함<br>(안 제7조제1항) .....                                       | 14       |
| 라. 재하도급 시 수급인에게도 통보,<br>재하도급계약에 도급계약의 원칙 준용 등(안 제29조) .....                                  | 17       |
| 마. 재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9조의2) .....                                                   | 25       |
| 바.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강화<br>(안 제29조의3) .....                                         | 31       |
| 사.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br>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안 제29조의4 신설) .....                         | 36       |
| 아.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 강화<br>(안 제83조제7호의2 신설, 제84조, 제94조, 제95조의2, 제96조제4호 삭제) ..... | 45       |
| 자.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13조제1항나목 및 라목) .....                                                   | 59       |
| 차. 행정처분, 벌칙 등 제재 강화<br>(안 제82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                                    | 65       |

## I.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제2214810호)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종오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

다. 회 부 일 : 2025. 12. 4.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과 임금착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광주 학동 참사와 같이 연속적인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단가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부실시공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음. 특히 불법하도급이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속도전이 강요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무시되어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법령상 금지되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하도급과 재하도급 개념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면적 또는 물량에 기초한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처벌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

음. 설사 불법하도급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과징금 등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면서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의2호 및 제29조의4 등).

### 3. 검토의견

#### 가. 총괄적 검토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은 공사단가가 과도하게 낮아져 부실시공과 임금 등 체불 및 대형 인명피해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현행법<sup>1)</sup>은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까지만 인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1,161건, 연간 175~292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음.

### 【하도급금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단위: 건)

| 구 분      |                              | 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합 계      |                              | 1,161 | 175   | 220   | 227   | 248   | 292   |
| 영업<br>정지 | 소계                           | 325   | 60    | 76    | 48    | 67    | 74    |
|          | 일괄하도급<br>(제29조제1항)           | 19    | 5     | 3     | 1     | 4     | 6     |
|          | 동일업종간 하도급<br>((舊)제29조제2항)    | 8     | 5     | 1     | 1     | 1     | -     |
|          | 전문공사 하도급<br>(제29조제2항)        | 23    | -     | 4     | 5     | 6     | 8     |
|          | 재하도급<br>(제29조제3항)            | 21    | 3     | 4     | 6     | 3     | 5     |
|          | 소규모 하도급<br>(제29조제4항)         | 6     | -     | -     | 2     | 2     | 2     |
|          | 전문업자 도급 종합공사<br>하도급(제29조제5항) | -     | -     | -     | -     | -     | -     |
|          | 무등록 (재)하도급<br>(제25조제2항)      | 252   | 48    | 65    | 34    | 51    | 54    |
| 과        | 소계                           | 836   | 115   | 144   | 179   | 181   | 218   |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구 분 |                              | 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징금  | 일괄하도급<br>(제29조제1항)           | 23  | 7     | 9     | 2     | 4     | 2     |
|     | 동일업종간 하도급<br>((舊)제29조제2항)    | 8   | 3     | 3     | 2     | -     | -     |
|     | 전문공사 하도급<br>(제29조제2항)        | 151 | 5     | 46    | 42    | 27    | 31    |
|     | 재하도급<br>(제29조제3항)            | 60  | 10    | 7     | 10    | 17    | 16    |
|     | 소규모 하도급<br>(제29조제4항)         | 38  | -     | 3     | 14    | 3     | 18    |
|     | 전문업자 도급 종합공사<br>하도급(제29조제5항) | 2   | -     | -     | 1     | -     | 1     |
|     | 무등록 (재)하도급<br>(제25조제2항)      | 562 | 90    | 76    | 110   | 131   | 155   |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2021년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sup>2)</sup>에서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시행에 따른 저가공사로 구조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하였던 점, 원도급사의 관리감독이 해이했던 점 등을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였는바, 불법하도급 근절 및 하도급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임.

개정안은 하도급 및 하수급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재하도급 및 재하도급인의 정의 신설,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결격사유·행정처분·벌칙·과태료·하도급 참여 제한 등 제재 강화, 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정,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보고서” 2021.8.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개념 정립, 하도급에 대한 관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공사에 있어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 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안 제2조(정의)                 | - 재하도급, 재하도급인 정의 신설                                                                                              |
| 안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 - 도급계약에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 계약이 포함됨을 명시                                                                                  |
| 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련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강화 및 신설                                                                           |
| 안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 다시 하도급 → 재하도급으로 정비<br>- 재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가 그 사실을 발주자 외에 ‘수급인’에게도 통보하도록 명시<br>- 재하도급계약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준용            |
| 안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 - 하수급인이 체결하는 도급계약 → 재하도급계약으로 정비<br>- 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리 강화<br>(계약 내용 변경 및 해지 요구,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정 등 ) |
| 안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 제한) | -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유형 확대<br>- 하도급 참여 제한의 소멸시효 삭제                                                       |
| 안 제29조의4(손해배상의 책임)        | -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 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배 이내)                                       |
| 안 제82조(영업정지 등)            | -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br>- 계약서 및 공사대장 허위작성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br>- 하수급인의 위반행위 목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과실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
| 안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 -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 구분                      | 주요 내용                          |
|-------------------------|--------------------------------|
| 안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 -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자수자 특례 규정  |
| 안 제94조(벌칙)              | -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
| 안 제95조의2(벌칙)            | -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
| 안 제96조(벌칙)              | -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
| 안 제97조(벌칙)              | - 계약서 및 공사대장 허위작성 등에 대한 벌칙 신설  |
| 안 제98조(양벌규정)            | -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에 대한 벌칙에 양벌규정 적용 |
| 안 제99조(과태료)             | - 하도급계획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강화       |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제재 강화 수준의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일부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수급인이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하도급 참여 제한 소멸시효 삭제 및 행정처분·형벌 등의 강화는 제재 수준이 과도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sup>3)</sup>

대한건설기계협회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자금 지급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조리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특히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의 근절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3)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한 의견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조문별 검토에 기재함.

## 나. 재하도급 및 재하도급인 정의 신설

### (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14호의2 신설)

개정안은 ‘재하도급’ 및 ‘재하도급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12. (생략)<br><u>&lt;신설&gt;</u><br><br>13.·14. (생략)<br><u>&lt;신설&gt;</u><br><br>15. (생략) | 제2조(정의) -----<br>-----.<br>1. ~ 12. (현행과 같음)<br><u>12의2. “재하도급”이란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 이외의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u><br>13.·14. (현행과 같음)<br><u>14의2. “재하도급인”이란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u><br>15.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4호<sup>4)</sup>까지는 각각 발주자, 도급, 하도급, 수급인, 하수급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 중 ‘도급’은 ①원도급, ②하도급, ③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고,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①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계약도 하도급에 해당하고, ②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계약도 하도급에 해당하여, ①‘원도급의 하도급’과 ②‘하도급의 하도급’이 모두 ‘하도급’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sup>5)</sup>

5) 하도급 및 하수급인 등의 정의와 관련된 유사 입법례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은 다음과 같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재하도급’을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재하도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자로 규정하여, ‘하도급’ 및 ‘하수급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그 정의를 신설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sup>6)</sup>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는바,<sup>7)</sup>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7)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35.3%) 적발”, 2023.9.2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하였다.
-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명칭 및 개념을 구분하여 용어 사용의 혼선을 해소하고, ‘재하도급의 금지 및 예외적 허용’이라는 원칙과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정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재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 제2조제12호의2는 ‘재하도급’을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 이외의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재하도급은 그 개념상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점, ‘도급인’이라는 용어는 정의 규정이 없어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개정안 제2조제14호의2의 ‘재하도급인’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소프트웨어 진흥법」<sup>8)</sup> 등에서 ‘재하수급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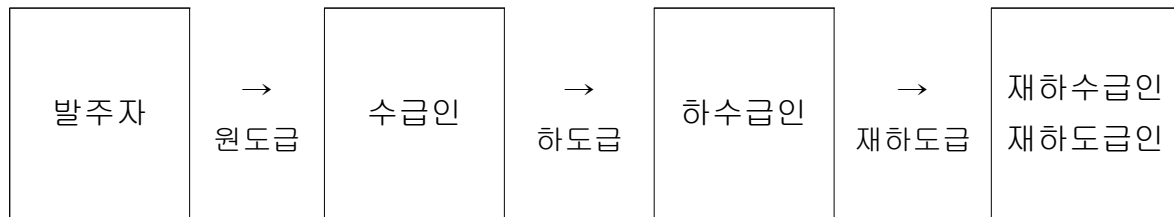
---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9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 ③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하수급인’이 보다 적절해 보임.<sup>9)</sup>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9) ‘재하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입법례로는 현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정부의 책무에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포함  
(안 제7조제1항)

개정안은 도급계약에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u>도급계약의 방법</u>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br>-----<br>-----<br>-----<br>--- <u>도급계약(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u> -----<br>-----<br>-----<br>-----<br>-----.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7조<sup>10)</sup>는 건설 관련 주체로서 정부,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

10)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

설사업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정부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정부가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의 방법 등과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을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조제11호<sup>11)</sup>는 ‘도급’을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도급계약에는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이 포함됨.

---

할 것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1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법 제22조<sup>12)</sup>는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도급계약에 하도급계약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고, 개정안도 제29조제7항<sup>13)</sup>에서 재하도급에 관한 당사자의 계약에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이는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 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은 제7조제1항에도 도급계약에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1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⑦ 재하도급에 관한 당사자의 계약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재하도급 시 수급인에게도 통보, 재하도급계약에 도급계약의  
원칙 준용 등(안 제29조)

개정안은 ①‘다시 하도급’이라는 용어를 ‘재하도급’으로 정비하고(안 제29조제3항 및 제6항), ②재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가 그 사실을 발주자 외에 ‘수급인’에게도 통보하도록 명시하며(안 제29조제6항), ③재하도급에 관한 당사자의 계약에 현행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를 준용(안 제29조제7항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br>② (생략)<br>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u>다시 하도급</u>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하도급</u> 할 수 있다.<br>1. (생략)<br>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u>다시 하도급</u> 하는 경우<br>가·나. (생략)<br>④·⑤ (생략)<br>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br>② (현행과 같음)<br>③ -----<br>----- <u>재하도급</u> 할-----<br>--. -----<br>----- <u>재하도급</u> 할-----<br>----.<br>1. (현행과 같음)<br>2. -----<br>-----<br>-----<br>-----<br>----- <u>재하도급</u><br><u>하는</u> -----<br>가·나. (현행과 같음)<br>④·⑤ (현행과 같음)<br>⑥ ----- |

| 현행                                                                                                                                             | 개정안                                                                                                                    |
|------------------------------------------------------------------------------------------------------------------------------------------------|------------------------------------------------------------------------------------------------------------------------|
| (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r>-----제3<br>항제2호에 따라 재하도급하는-----<br>-----<br>-----발주자(재하도급인 경우는<br>수급인과 발주자)-----<br>-----.<br>-----<br>-----. |
| 1. 2. (생략)<br><u>&lt;신설&gt;</u>                                                                                                                | 1. 2. (현행과 같음)<br>⑦ 재하도급에 관한 당사자의 계약<br>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 ‘다시 하도급’을 ‘재하도급’으로 정비

개정안 제29조제3항 및 제6항은 개정안이 ‘재하도급’이라는 용어를 정의<sup>14)</sup>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29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시 하도급’이라는 용어를 정의 규정에 따른 용어인 ‘재하도급’으로 정비하는 내용임.

하도급과 재하도급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두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조 제목(건설공사

14)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2. “재하도급”이란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 이외의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의 하도급 제한)에도 ‘재하도급’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 재하도급 사실을 ‘수급인’에게도 통보하도록 명시

현행법 제29조제6항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sup>15)</sup>

개정안 제29조제6항은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자 외에 ‘수급인’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sup>16)</sup>가 있으므로, 재하도급 사실의

### 1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 1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한 통보는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29조제6항은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및 발주자가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재하도급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재하도급을 승낙한 경우 등에는 통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하도급 및 재하도급 사실의 통보 규정 비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9조 | ○ 하수급인: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 ○ 하수급인: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항      | <p>다른 사람에게 <u>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u></p> <p>○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가능</u></p> <p>1.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br/>: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u>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u>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p> <p>※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u></p> <p>2. <u>전문공사</u> 업종을 등록한 <u>건설사업자</u><br/>: <u>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u>하는 경우<br/>가. 공사의 <u>품질</u>이나 <u>시공상</u>의 <u>능력</u>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u>에 해당할 것<br/>나. <u>수급인의 서면 승낙</u>을 받을 것</p> | <p>다른 사람에게 <u>재하도급할 수 없음.</u></p> <p>○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 가능</u></p> <p>1. (현행과 같음)</p> <p>2. <u>전문공사</u> 업종을 등록한 <u>건설사업자</u><br/>: <u>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u>하는 경우<br/>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
| 제29조 제6항 | <p>○ <u>하도급</u>(제3항 단서에 따라 <u>다시 하도급</u>하는 것을 포함)<u>한 건설사업자</u>와 제3항제2호에 따라 <u>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발주자에게 통보</u>하여야 함.</p> <p>○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p> <p>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p>                                                                                                                                                                                                                                                            | <p>○ <u>하도급</u>(제3항 단서에 따라 <u>재하도급</u>하는 것을 포함)<u>한 건설사업자</u>와 제3항제2호에 따라 <u>재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발주자(재하도급인 경우는 수급인과 발주자)에게 통보</u>하여야 함.</p> <p>○ (현행과 같음)</p>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 <p>단서에 따라 <u>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u>한 경우</p> <p>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u>한 경우</p> |       |

### (3) 재하도급계약에 도급계약의 원칙 준용

개정안 제29조제7항17)은 재하도급에 관한 당사자의 계약에 제22조(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도급’을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sup>18)</sup>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은 현행법상으로도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 제22조19)는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규정

17) 개정안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⑦ 재하도급에 관한 당사자의 계약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면서 도급계약에 하도급계약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개정안은 재하도급에 관한 당사자의 계약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19)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다만,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개정안 제29조제7항을 신설하기보다  
현행법 제22조제1항의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를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 재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9조의2)

개정안은 하수급인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재하도급계약’으로 정비하고,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의 재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재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br>(생략)                                                                                |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br>(현행과 같음)                                                                                                                                             |
|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u>도급계약을</u>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u>도급계약</u>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u>요구할 수 있다</u> . | ② -----<br>----- <u>재하도급계약을</u> -----<br>-----<br>----- <u>재하도급계약</u> -----<br>----- <u>요구하여야 한다</u>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④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u>재하도급계약을</u>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u>재하도급계약</u>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u>요구하여야</u> 하며,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u>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u> 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신설>                                                                                                         | ⑤ 발주자는 수급인이 <u>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u>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u>도급계약을</u> 해지할 수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있다.</p> <p>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수급인)은 수급인(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계약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

현행법 제29조의2<sup>20)</sup>에 따르면, ‘수급인’<sup>21)</sup>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sup>22)</sup>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2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는 하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불법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사후 조치 등의 재하도급 관리 의무를 수급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정안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하수급인의 위법한 재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첫째, 불법 재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계약 내용 변경 또는 해지 요구를 수급인의 ‘재량(요구할 수 있다)’에서 ‘의무(요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있음.

### 【 수급인의 재하도급 관리 규정 비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수급인의 재하도급 관리 | <p>-제29조의2제2항-</p> <p>○ 수급인 : <u>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u></p> | <p>-안 제29조의2제2항-</p> <p>○ 수급인 : <u>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함.</u></p>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 <p>-제29조의2제3항-</p> <p>○ 수급인 :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u>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u>할 수 있음.</p> | <p>-안 제29조의2제3항-</p> <p>○ (현행과 같음)</p> |

둘째, 수급인 외 ‘발주자’에 대하여 재하도급 관리 권한 및 의무를 신설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발주자에 대해서도 하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재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하도록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발주자의 재하도급 관리 규정 비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발주자의 재하도급 | <신 설> | <p>-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p> <p>○ 발주자: <u>하수급인</u>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p>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관리  |       | <u>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재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u>   |
|     | <신 설> | -안 제29조의2제5항 신설-<br>○ 발주자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u>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u> |

셋째, 하수급인이 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수급인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하도급계약 또는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계약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재하도급 관리 규정 비교 - 하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위약금 지급】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하수급인<br>또는<br>수급인의<br>위약금<br>지급 | <신 설> | -안 제29조의2제5항 신설-<br>○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u>도급계약을 해지</u> 하는 경우<br>: 하수급인(수급인)은 수급인(발주자)에게 <u>해당 건설공사 계약의 10%의 위약금</u> 을 지급하여야 함. |

이는 수급인 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계약을 인지한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하도록 하고, 하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해당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재하도급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재하도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 부과되는 의무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는 수급인의 경우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의 차등과 충분한 주의·관리·감독을 한 경우에 대한 면책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바.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강화

### (안 제29조의3)

개정안은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 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하도급 참여 제한의 소멸시효를 삭제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br>-----<br>-----<br>-----<br>-----<br>-----<br>-----<br>-----<br>-----<br>-----. |
|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 1. 제82조제2항제3호에-----<br>-----                                                                                     |
| 2. ~ 6. (생략)                                                                                                                                                                                                      | 2. ~ 6.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⑥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 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                                                                                                                                       | ⑥ -----<br>-----<br>-----자가 있음을 인지한-----<br>-----                                                                |

| 현행                                                                                                                                            | 개정안                                                                     |
|-----------------------------------------------------------------------------------------------------------------------------------------------|-------------------------------------------------------------------------|
| <p>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p> | <p>-----</p> <p>-----</p> <p>-----</p> <p>-----.</p> <p>&lt;삭 제&gt;</p> |

현행법 제82조제2항제3호<sup>23)</sup>는 건설사업자가 현행법 제25조제2항<sup>24)</sup>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sup>25)</sup>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2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2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29조의3제1호는 건설사업자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현행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29조의3제1호는 현행법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사유에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하도급 참여 제한 사유를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로 변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 제한을 제25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

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현행법 및 개정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비교】

| 구분       |                                 | 위반 시<br>행정처분                                                |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하도급 참여 제한 |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제25조 제2항 |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                 | 영업정지<br>(1년 이내)<br><br>또는<br><br>과징금<br>(도급금액의<br>100분의 30) | -                        | 제한    |
| 제29조 제1항 | 일괄 하도급 금지                       |                                                             | 제한                       | 제한    |
| 제29조 제2항 | 전문공사의 하도급 금지                    |                                                             | 제한                       | 제한    |
| 제29조 제3항 | 재하도급 금지                         |                                                             | 제한                       | 제한    |
| 제29조 제4항 | 10억미만 공사의<br>종합업자에 대한 하도급<br>금지 |                                                             | -                        | 제한    |
| 제29조 제5항 | 전문업자가 도급받은<br>종합공사의 하도급 금지      |                                                             | -                        | 제한    |

또한, 현행법 제29조의3제7항<sup>26)</sup>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29조의3제7항을 삭제하여,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이 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이는 불법 하도급 제재 강화를 통해 불법 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소멸시효 제도의 의의 및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는 하도급 참여 제한의 소멸시효 삭제는 무제한적으로 하도급 참여 제한을 가능하게 하여 신의성실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다른 제재와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사.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안 제29조의4 신설)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 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관여한 건설사업자 및 재하도급로 하여금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u>제29조의4(손해배상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 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관여한 건설사업자 및 재하도급업자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u></li> <li><u>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u></li> <li><u>3. 제29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u></li> <li><u>4. 제29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u></li> <li><u>5.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에 의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u></li> </ol> <p><u>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li> <li>2.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li> <li>3. 위법행위로 인하여 건설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li> <li>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li> <li>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li> <li>6. 하도급을 한 자와 받은 자 및 원도급자의 재산상태</li> <li>7. 원도급자의 가담 정도</li> <li>8. 건설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li> </ol>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 5까지를 준용한다.</p>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적 목적과 재발 억제라는 예방적 목적이 민사책임에 혼용된 손해배상제도로, 행위자의 고의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주목하여 전보 배상액보다 큰 불법행위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며,<sup>27)</sup>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sup>28)</sup> 「중대재해처벌법」,<sup>29)</sup> 「제조물 책임법」<sup>30)</sup> 등이 있음.

27)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646.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제25조제2항(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sup>31)</sup>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②제28조의2제1항(노무비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시공)<sup>32)</sup>을 위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③제29조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30)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3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3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

(일괄 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금지, 재하도급 금지, 10억미만 공사의 종합업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 전문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금지)<sup>33)</sup>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④제29조의<sup>34)</sup>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

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 3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여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⑤제22조제2항 및 제3항<sup>35)</sup>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에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4.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다.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제한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6.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참여제한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그 제한내용을 통보(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⑥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 35)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의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는 경우(제29조의4제1항제5호)에 대하여,

해당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 또는 안전의무 위반  
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36)에 해당하는 중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관여한 건설사업자 및 재하도급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 개정안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 】

| 징벌적 손해 배상 요건             |                                                                                                                            |                        | 징벌적 손해배상                    |
|--------------------------|----------------------------------------------------------------------------------------------------------------------------|------------------------|-----------------------------|
| ① 다음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현장 |                                                                                                                            | ②부실시공<br>또는<br>안전의무 위반 | ③중대재해사고<br>발생               |
| 안 제1호                    | - 제25조제2항(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                        |                             |
| 안 제2호                    | - 제28조의2제1항(노무비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시공)을 위반하여 하도급                                                                                  |                        |                             |
| 안 제3호                    | - 제29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일괄 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금지, 재하도급 금지, 10억 미만 공사의 종합업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 전문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금지)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                        |                             |
| 안 제4호                    | - 제29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                        |                             |
| 안 제5호                    | -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에 의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                        |                             |
|                          |                                                                                                                            |                        | ①+②+③의 경우<br>10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

이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 입법례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려는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중대 재해사고’ 발생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sup>37)</sup>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sup>38)</sup>

한편, 개정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관여한 건설사업자 및 재하도급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법상 건설사업자<sup>39)</sup>의 개념에 재하도급업자가 포함되는 점, 현행법 및 개정안 제2조에서는 ‘수급인, 하수급인, 재하도급인’으로 용어를 정의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38) 참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440호, 엄태영의원 대표발의)가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음. 동 법률안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 손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액의 5배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책임으로 하고 있음.

39)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해 이미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존재하고,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안 제83조제7호의2 신설, 제84조, 제94조, 제95조의2, 제96조제4호 삭제)

| 현행                                                                                                                                                                                                                                                                                                                                    | 개정안                                                                                                                                                                                                                                                                                                                                                                                        |
|---------------------------------------------------------------------------------------------------------------------------------------------------------------------------------------------------------------------------------------------------------------------------------------------------------------------------------------|--------------------------------------------------------------------------------------------------------------------------------------------------------------------------------------------------------------------------------------------------------------------------------------------------------------------------------------------------------------------------------------------|
| <p>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u>&lt;신설&gt;</u></p> | <p>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u>7의2. 제29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자 또는 재하도급업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키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후 5년 이내에</u></p> |



| 현행                                                                                                                                                | 개정안                                                                                                                                        |
|---------------------------------------------------------------------------------------------------------------------------------------------------|--------------------------------------------------------------------------------------------------------------------------------------------|
|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 5. (생략)<br><u>&lt;신설&gt;</u><br><br><u>&lt;신설&gt;</u>                    | 제95조의2(벌칙) -----<br>-----.<br>-----<br>-----<br>--.<br>1. ~ 5. (현행과 같음)<br>6.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자<br>7. 제6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은 자 |
|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 3. (생략)<br>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br>4의2. ~ 7. (생략) | 제96조(벌칙) -----<br>-----<br>-----.<br>1. ~ 3. (현행과 같음)<br><u>&lt;삭제&gt;</u><br><br>4의2. ~ 7. (현행과 같음)                                       |

## (1)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현행법 제83조<sup>40)</sup>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가 부정한

4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sup>41)</sup>을 한 경우, 등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sup>42)</sup>에 따라

2. 삭제 <2016. 2. 3.>

-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4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건설업의 등록기준<sup>43)</sup>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1년 이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83조제7호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안 제29조의4제1항 각 호<sup>44)</sup>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자 또는 재하도급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

4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3)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4) 개정안

제29조의4(손해배상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현장에서 부실 시공 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관여한 건설사업자 및 재하도급업자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sup>45)</sup>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키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후 5년 이내에 다시 불법하도급을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sup>46)</sup>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이는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가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키고도 다시 불법하도급을 하는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통해 일정 기간 건설업 운영에서 배제함으로써, 불법적인 하도급 또는

-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3. 제29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4. 제29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5.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에 의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는 경우

#### 4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4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재하도급을 근절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도급업자’ 또는 ‘재하도급업자’라는 용어는 현행법 및 개정안 제2조의 ‘수급인, 하수급인, 재하도급인’ 등의 용어 정의를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개정안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

| 행정처분 요건                           |                                                                                                                            |            | 행정처분                                            |                        |
|-----------------------------------|----------------------------------------------------------------------------------------------------------------------------|------------|-------------------------------------------------|------------------------|
| ①안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업자 또는 재하도급업자 |                                                                                                                            | ②중대재해사고 발생 | ③중대재해사고 발생 후 5년 이내 다시 불법하도급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 ①+②+③의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 안 제1호                             | - 제25조제2항(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            |                                                 |                        |
| 안 제2호                             | - 제28조의2제1항(노무비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시공)을 위반하여 하도급                                                                                  |            |                                                 |                        |
| 안 제3호                             | - 제29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일괄 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금지, 재하도급 금지, 10억 미만 공사의 종합업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 전문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금지)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            |                                                 |                        |
| 안 제4호                             | - 제29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            |                                                 |                        |
| 안 제5호                             | -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에 의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            |                                                 |                        |

## (2)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자수자 특례 규정

현행법 제84조<sup>47)</sup>는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제9조의3제2항<sup>48)</sup>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영업정지의 기간 등 감경 사유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과 관련된 ‘제29조의4를 자진 신고한 자’를 추가 하고 있음.

불법하도급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 간 공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 행위를 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혐의를 입증

---

### 47)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 4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개정안과 같이 불법하도급 자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에 대한 부담의 완화로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법 하도급 근절 및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sup>49)</sup>

다만, ‘제29조의4를 자진 신고한 자’라는 조문은 ‘제29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실을 신고한 자’ 등으로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49)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3)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현행법 제96조제4호<sup>50)</sup>는 현행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96조제4호를 삭제하고, 이를 개정안 제94조와 제95조의2로 이관하고 있으며, 처벌 요건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안 제29조의4제1항 각 호<sup>51)</sup>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라는 조문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처벌 대상에 ①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한 하도급, ②제29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을 위반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

50)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51) 개정안

제29조의4(손해배상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현장에서 부실 시공 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관여한 건설사업자 및 재하도급업자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3. 제29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4. 제29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5.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에 의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는 경우

③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에 의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추가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유형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 【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처벌 대상 비교 】

| 현행                                                                                                            | 개정안<br>(안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                                                                                                               |
|---------------------------------------------------------------------------------------------------------------|---------------------------------------|---------------------------------------------------------------------------------------------------------------|
| 제25조제2항 위반<br>-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 위반                                                                            | 안 제1호                                 | 제25조제2항 위반<br>-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금지 위반                                                                             |
| -                                                                                                             | 안 제2호                                 | 제28조의2제1항 위반<br>- 노무비의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시공 위반                                                                      |
|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위반<br>- 일괄 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금지, 재하도급 금지, 10억미만 공사의 종합업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 전문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금지 위반 | 안 제3호                                 |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위반<br>- 일괄 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금지, 재하도급 금지, 10억미만 공사의 종합업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 전문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금지 위반 |
| -                                                                                                             | 안 제4호                                 | 제29조의3 위반<br>-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위반                                                                              |
| -                                                                                                             | 안 제5호                                 |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에 의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

또한, 개정안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의 형량 및 금액을 상향하고 있음.

먼저, 개정안 제95조의2는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자 및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의 형량 및 금액의 상한이 높아지게 됨.

다음, 개정안 제94조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94조<sup>52)</sup>는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sup>53)</sup>에 따른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현행법 제94조제1항), 해당 죄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현행법 제94조제2항) 하고 있음.

---

52)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개정안 제94조는 현행법의 처벌 요건에 ‘안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원인이 되어’라는 조문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원인이 되어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원인이 되어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이 현행보다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

### 【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규정 비교 】

| 처벌요건<br>(안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                                                                                                                                     | 처벌                                                |                                                                                                                               |                                                            |
|----------------------------------------|-------------------------------------------------------------------------------------------------------------------------------------|---------------------------------------------------|-------------------------------------------------------------------------------------------------------------------------------|------------------------------------------------------------|
|                                        |                                                                                                                                     | 현행<br>(제96조제4호)                                   | 개정안                                                                                                                           |                                                            |
|                                        |                                                                                                                                     |                                                   | 안 제95조의2                                                                                                                      | 안 제94조                                                     |
| 안 제1호                                  | -제25조제2항(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 <b>3년 이하</b> 징역 또는 <b>3천만원 이하</b> 벌금<br>(제96조제4호) |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b>한 자</b> 및 <b>받은 자</b><br><br>→ <b>5년 이하</b> 징역 또는 <b>5천만원 이하</b> 벌금<br>(안 제95조의2제6호 및 제7호 신설) | ○안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원인이 되어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
| 안 제2호                                  | -제28조의2제1항(노무비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시공)을 위반하여 하도급                                                                                            | (형사처벌 없음)                                         |                                                                                                                               | → <b>5년 이하</b> 징역이나 금고 또는 <b>5천만원 이하</b> 벌금<br>(안 제94조제1항) |
| 안 제3호                                  |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일괄 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금지, 재하도급 금지, 10억미만 공사의 종합업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 전문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금지)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 <b>3년 이하</b> 징역 또는 <b>3천만원 이하</b> 벌금<br>(제96조제4호) |                                                                                                                               |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원인이 되어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
| 안 제4호                                  | -제29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을 위반                                                                                                      | (형사처벌 없음)                                         |                                                                                                                               | → <b>10년 이하</b> 징역이나 금고 또는                                 |

| 처 별 요 건<br>(안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br>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                                                                               | 처 별              |          |                                 |
|----------------------------------------------|-------------------------------------------------------------------------------|------------------|----------|---------------------------------|
|                                              |                                                                               | 현 행<br>(제96조제4호) | 개정안      |                                 |
|                                              |                                                                               |                  | 안 제95조의2 | 안 제94조                          |
|                                              | 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br>하는 경우                                                       |                  |          |                                 |
| 안<br>제5호                                     |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br>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 또는<br>면적에 기초한 계약에 의해<br>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br>경우 | -                |          | <u>1억원 이하</u> 벌금<br>(안 제94조제1항) |

개정안은 ①현행법 제83조제7호에 따른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현행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②신설되는 개정안 제83조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5년 동안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 59 –

| 현행                                                                                                                                                                                                                                                                                                | 개정안                                                                                                                                                                                                          |
|---------------------------------------------------------------------------------------------------------------------------------------------------------------------------------------------------------------------------------------------------------------------------------------------------|--------------------------------------------------------------------------------------------------------------------------------------------------------------------------------------------------------------|
| <p>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br/>· 제3호의3· 제8호· 제10호 및<br/>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br/>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br/>지나지 아니한 자</p> <p>다. (생략)</p> <p>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br/>· 제3호의3· 제4호· 제5호· 제8<br/>호· 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br/>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br/>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br/>자</p> <p>4. ~ 6. (생략)</p> <p>②· ③ (생략)</p> | <p>나. -----<br/>-----제7호· 제7호의2· 제8<br/>호-----<br/>-----<br/>-----</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br/>-----제7호·<br/>제7호의2· 제8호-----<br/>-----<br/>-----</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③ (현행과 같음)</p> |

① 현행법 제83조제7호<sup>54)</sup>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9조 중 제1항부터 제3항<sup>55)</sup>까지 중 어느 하나를

5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sup>56)</sup>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1년 이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하여, 현행법 제13조제1항 라목은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83조제7호에 따른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결격사유 규정을 현행 제13조제1항 라목(결격사유: 1년 6개월)에서

---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5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나목(결격사유: 5년)으로 변경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고 있음.

### 【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 기간 강화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p>현행법 제83조제7호에 따른 사유로<br/>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p> <p>「건설산업기본법」<br/>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각 호 외의 부분 생략)<br/>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br/>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br/>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br/>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br/>위반한 경우</p> | <p>제13조제1항<br/>라목에 따른<br/>결격사유 및<br/>기간</p> <p>제83조제7호의<br/>사유로<br/>건설업의 등록<br/>이 말소된 후<br/><b>1년 6개월</b>이<br/>지나지 아니한<br/>자</p> | <p>제13조제1항<br/>나목에 따른<br/>결격사유 및<br/>기간</p> <p>제83조제7호의<br/>사유로<br/>건설업의 등록<br/>이 말소된 후<br/><b>5년</b>이 지나지<br/>아니한 자</p> |

② 개정안 제83조제7호의<sup>57)</sup>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과 관련된 제 29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자 또는 재하도급업자가 중대 재해사고를 일으키고, 중대재해사고 발생 후 5년 이내에 다시 불법하도급을 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sup>58)</sup>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그

#### 57) 개정안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7의2. 제29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자 또는 재하도급업자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키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후 5년 이내에 다시 불법하도급을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58)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1년 이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고,

개정안 제13조제1항나목은 개정안 제83조제7호의2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후에 다시 불법하도급이 반복되는 경우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있음.

### 【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 신설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p>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제83조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p> <p><b>개정안</b><br/>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각 호 외의 부분 생략)<br/>7의2. 제29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자 또는 재하도급업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키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후 5년 이내에 다시 불법하도급을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p> | -   | <p>제13조제1항 <b>나목</b>에 규정된 결격사유 및 기간</p> <p>제83조제7호의 2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b>5년</b>이 지나지 아니한 자</p>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 강화 및 신설은 반복적으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 인해 중대재해사고를 유발하는 건설사업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건설업 운영에서 배제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로 보임.

## 차. 행정처분, 벌칙 등 제재 강화

(안 제82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개정안은 계약서 또는 공사대장 허위 작성,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미이행, 하도급계획의 미이행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br>-----<br>-----<br>-----<br>-----<br>-----.          |
| 1. ~ 8.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8의2.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7항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u> |
| <u>&lt;신설&gt;</u>                                                                                                        | <u>8의3. 제22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통지한 경우</u>                           |
| 9. ~ 11. (생략)                                                                                                            | 9. ~ 11. (현행과 같음)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 ② -----<br>-----<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br>-----<br>-----<br>-----<br>-----<br>-----<br>-----.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6. -----<br>-----<br>-----<br>-----<br>----- <u>공모 또는</u><br><u>인지하고도 방치한</u> -----<br>----- |
| 7. (생략)                                                                                                                                                           | 7. (현행과 같음)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7조(벌칙) -----<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신설>                                                                                                                                                              | <u>1의2.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7항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u>                                               |
| <신설>                                                                                                                                                              | <u>1의3.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자</u>                                                      |
| <신설>                                                                                                                                                              | <u>1의4. 제22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통지한 자</u>                                             |

| 현행                                                                                                                                                                                                                                                                                                                                                                                   | 개정안                                                                                                                                                                                                                                                                                                                                                                                                                                        |
|--------------------------------------------------------------------------------------------------------------------------------------------------------------------------------------------------------------------------------------------------------------------------------------------------------------------------------------------------------------------------------------|--------------------------------------------------------------------------------------------------------------------------------------------------------------------------------------------------------------------------------------------------------------------------------------------------------------------------------------------------------------------------------------------------------------------------------------------|
| <p>2. ~ 4. (생략)</p> <p>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p> <p>2.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 <p>2. ~ 4. (현행과 같음)</p> <p>제98조의2(과태료) -----<br/>-----<br/>-----.</p> <p><u>&lt;삭제&gt;</u></p> <p>2. (현행과 같음)</p> <p>3.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4.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p> <p>5.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제99조(과태료) -----<br/>-----<br/>-----.</p> <p>1.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p> <p>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p> <p>3의2. ~ 5. (생략)</p> <p>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p> <p>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7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p> | <p>&lt;삭제&gt;</p> <p>&lt;삭제&gt;</p> <p>3의2. ~ 5.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

| 현행                                                                                                     | 개정안                                        |
|--------------------------------------------------------------------------------------------------------|--------------------------------------------|
| <p>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9. ~ 15. (생략)</p> | <p>&lt;삭제&gt;</p> <p>9. ~ 15. (현행과 같음)</p> |

먼저, 현행법 제99조제2호 및 제3호<sup>59)</sup>는 각각 현행법 제22조제2항<sup>60)</sup>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와 현행법 제22조제6항<sup>61)</sup>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내의 과징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59)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60)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6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건설사업자를 추가하고 있음.

###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제재 비교 】

| 제재 요건                                  | 제재                        |                                                                |
|----------------------------------------|---------------------------|----------------------------------------------------------------|
|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제2항 또는 안 제29조제7항의 계약서 허위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br>(제99조제2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br>1억원 이하 과징금<br>(안 제82조제1항제8호의2<br>및 제8호의3 신설) |
| -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대장 허위 작성               | -                         | 1년 이하 징역 또는<br>1천만원 이하 벌금<br>(안 제97조제1호의2부터<br>제1호의4까지 신설)     |
| -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지 또는 허위 통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br>(제99조제3호) |                                                                |

다음, 현행법 제82조제2항제6호,<sup>62)</sup> 제98조의2제1호,<sup>63)</sup> 제99조제6호<sup>64)</sup>는

#### 6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63)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64)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법 제29조의2제1항<sup>65)</sup>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한 수급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경우, 묵인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30% 이내 과징금(지시·공모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묵인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실이 있는 경우)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제재 규정을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30% 이내 과징금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위반행위를 묵인하거나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에 대한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하수급인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6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제재 비교 】

| 제재 요건                                         | 제재                                               |                                                    |
|-----------------------------------------------|--------------------------------------------------|----------------------------------------------------|
|                                               | 현행                                               | 개정안                                                |
| -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위반행위 지시·공모)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br>도급금액 30% 이내 과징금<br>(제82조제2항제6호)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br>도급금액 30% 이내 과징금<br>(안 제82조제2항제6호) |
| -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위반행위 묵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br>(제98조의2제1호)                       |                                                    |
| -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과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br>(제99조제6호)                        |                                                    |

다음, 현행법 제99조제7호, 제7호의2, 제8호<sup>66)</sup>는 각각 제31조의2<sup>67)</sup>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3제2항<sup>68)</sup>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

### 66)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7)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68)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제34조제1항<sup>69)</sup>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sup>70)</sup>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제99조에서 제98조의2로 이동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있음.

###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제재 비교 】

| 제재 요건                                                                                                                                                                                                                                                                                              | 제재                                  |                                          |
|----------------------------------------------------------------------------------------------------------------------------------------------------------------------------------------------------------------------------------------------------------------------------------------------------|-------------------------------------|------------------------------------------|
|                                                                                                                                                                                                                                                                                                    | 현행                                  | 개정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li> <li>-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li> <li>-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li> </ul> | 500만원 이하 과태료<br>(제99조제7호·제7호의2·제8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br>(안 제98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

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사기간  
2. 제1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 69)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70)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행정적 실수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도 행정처분(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과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91 |